

등록번호	재무과-16712
등록일자	2015.8.24.
결재일자	2015.8.2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재산관리팀장	★재무과장	경제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혜영	민태일	代민태일	김종두	조인동	08/25 代조인동
협 조	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주무관	임근래 이창조 代송자영 김오녀			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	정책기획담당관 여성가족과 감사담당관	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	2015. 7. 30. 원안동의 2015. 8. 4. 원안동의 2015. 8. 6. 원안동의	해당없음

서 대 문 구
재무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계획

2015. 7. 21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며,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1 관련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시행 2015. 7. 21. 법률 제13017호)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(시행 2015. 7. 21. 대통령령 제26408호)
- 2015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[구청장방침, 일자리경제과-29960(2015.7.30)]

2 개정 이유

-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 통일, 공정성 확보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하였던 심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
-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사용·대부료의 효율을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함.
-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·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초과상승분에서 100분의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

-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변상금 징수유예기간 신설
-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명칭이 “경리관” 에서 “재무관” 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및 관련 조례 일괄 개정

3

주요 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- 조례에 위임하였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·운영,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」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추가 (안 제3조제1항, 제2항 개정, 제7항, 제8항 삭제)
 -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과 동일하게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·처분의 목적·용도·위치가 변경된 경우 재심의를 받도록 개정 (안 제4조제1항제6호가목)
 - 자치단체와 의회간 갈등해소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(안 제11조제1항)
 - 일반재산의 매각·교환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의뢰대상 확대 (안 제74조제4항, 제95조)
 -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·대부료 감액대상 확대 :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→ 100분의 5 초과상승분 (안 제33조)
 -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징수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함. (안 제92조의2 신설)

□ 타 법령 개정사항 및 우리구 정책사업 반영

- 「지방재정법」 제67조, 제91조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(경리관 → 재무관)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 상 명칭 일괄 개정 (안 제65조, 제66조제2항, 제67조제2항, 제74조제항, 부칙 제3조)
- “2015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(구청장방침, 2015. 7. 30)” 에 따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사용·대부료의 효율을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함. (안 제27조제4항제12호 신설)

□ 그 밖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 보완

- 착오 기재된 상위법 조항 수정 (안 제4조제2항제1호, 제21조, 제25조, 제27조제4항제3호, 제31조, 제36조, 제37조, 제71조제7호)
- 상위법 조항 삭제로 근거규정이 없어진 조항 삭제 (안 제31조제4항)
-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일부 문구 수정 (안 제30조제2항)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한 용어로 문구 수정 (안 제94조, 제95조)

4

향후 추진일정

- 입법예고 : 2015. 8월말
-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2015. 9월중
- 서대문구의회 안건 상정 : 2015. 10월중
- 조례 공포·시행 : 2015. 10월중

붙임 1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안 1부. 끝.